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원)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원)
30분 이상	17,450	2,618	150분 이상	50,640	7,596
60분 이상	25,320	3,798	180분 이상	57,020	8,553
90분 이상	34,120	5,118	210분 이상	63,530	9,530
120분 이상	43,430	6,515	240분 이상	70,080	10,512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감경)% 6 (감경)%

[별표 1]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	13,349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	12,035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7,515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9 (감경)%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화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감경)%